

©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-179호

**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
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주민공람 공고**

1.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8-9 일대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2. 본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의 열람공고에서 전자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2월 6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가. 공람기간: 2026. 2. 6.(금) ~ 2026. 3. 9.(월)(31일 간)

나. 공람사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

다. 공람내용: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

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

라. 공람장소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62) ※ 직접 방문 시

마. 의견제출: 서면 또는 전자문서(서울도시공간포털) 제출

1) 서 면: 공람기간[2026. 3. 9.(월) 18:00:00] 내 강북구청 주거

정비과에 우편도착하거나 직접 제출한 경우에만 유효함

2) 전자문서: 공람기간[2026. 3. 9.(월) 18:00:00] 내 서울도시공간

포털 열람공고(주민의견제출)에서 주민의견서 제출

(업로드)한 경우에만 유효함

바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

1)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(안)

구 분	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 규	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강북구 수유동 58-9 일대	-	증) 21,100.5	21,100.5	-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			비 고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-	현황 510세대 계획 828세대(증 318세대)			-

2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안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-	증) 21,100.5	21,100.5	100.0	-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-	증) 1,853.5	1,853.5	8.8	-
	도 로	-	증) 1,853.5	1,853.5	8.8	-
획 지	소 계	-	증) 19,247.0	19,247.0	91.2	-
	획 지 1	-	증) 19,247.0	19,247.0	91.2	-

3)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관한 계획(안)

가) 용도지역

구 분		면 적 (㎡)			비율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21,100.5	-	21,100.5	100.0	-
주거 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9,643.2	감) 9,006.1	637.1	3.0	-
	제3종일반주거지역	11,457.3	감) 10,240.9	1,216.4	5.8	-
	준주거지역	-	증) 19,247.0	19,247.0	91.2	-

■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(㎡)	변경사유
		기 정	변 경		
-	강북구 수유동 57-25 일대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준주거지역	9,006.1	삼양역세권에서 주택공급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
-	강북구 수유동 58-30 일대	제3종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10,240.9	삼양역세권에서 주택공급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

나) 용도지구(변경없음)

구 분	지구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연 장(m)	폭 원(m)	최초결정일	비 고
기 정	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	우이동 319 ~ 양동사거리	150,203 (2,227.5)	53,700 (152.1)	양측15 (15)	서울시고시 제2019-129호 (‘19.04.18.)	-

※ ()는 정비구역 내 편입 면적

4)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(안)

가) 추산액 및 산출근거

추정 비례율	• 추정비례율 산정방식: (총 수입-총 지출)÷종전자산 총액×100%				
	• 추정비례율: 118.30%				
	= (557,716,945천원-439,257,977천원)÷100,131,160천원×100				
	→ 총 수입 추정: 557,716,945천원				
	→ 총 지출 추정: 439,257,977천원				
	→ 종전자산추산액: 100,131,160천원(국공유지 및 현금청산추정액 제외)				

- ※ 해당 사항은 단순 참고를 위한 정비계획(안) 공람 시점에서의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의 개략적인 추산액이며,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, 조합설립인가,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) 공사비 및 분양가에 따른 비례율 변동표

비례율 변화표		변동률	공사비(천원)				
			-10%	-5%	0%	5%	10%
변동률		평균단가 (천원/3.3㎡)	7,110	7,505	7,900	8,295	8,690
일반분양가 (84형기준) (천원)	10%	33,000	208.01%	191.00%	174.00%	156.99%	139.99%
	5%	31,500	180.16%	163.15%	146.15%	129.14%	112.14%
	0%	30,000	152.31%	135.30%	118.30%	101.29%	84.29%
	-5%	28,500	124.46%	107.46%	90.45%	73.44%	56.44%
	-10%	27,000	96.61%	79.61%	62.60%	45.59%	28.59%

5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(안)

■ 도로

구 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47	20~30	보조 간선	5,055	미아동	수유동	일반도로	-	건고738 (‘63.12.24.)	-
변경	중로	1	47	20~30 (3)	보조 간선	5,055 (151)	미아동	수유동	일반도로	-	건고738 (‘63.12.24.)	-
신설	중로	3	(1)	6~13 (6~6.5)	국지 도로	160 (160)	수유동 58-9	수유동 58-96	일반도로	-	-	-
신설	소로	2	(1)	8 (3)	국지 도로	125 (125)	수유동 57-80	수유동 58-1	일반도로	-	-	-

※ ()는 정비구역 내 편입 면적 및 임시도로 번호

■ 도로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 1-47	중로 1-47	도로 확폭 [폭원 20~30m → 20~30m(3m), 연장 5,055m → 5,055m(151m)]	교통량 증가에 따른 인접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를 위해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
-	중로 3-(1)	도로 신설 (폭원 6~13m(6~6.5m), 연장 160m(160m))	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(안) 반영,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도로 지정
-	소로 2-(1)	도로 신설 (폭원 8m(3m), 연장 125m(125m))	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(안) 반영,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도로 지정

※ ()는 정비구역 내 편입 면적 및 임시도로 번호

6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시설 구분	시설의 종류	설치기준	기준면적(㎡)	계획면적(㎡)
계			-	3,026.20
주민 공동 시설	소계	서울시 주택 조례(100세대 ~ 1,000세대 미만) 828세대×2.5㎡×1.25	2,587.5㎡ 이상	2,946.20
	경로당	서울시 주택 조례(500세대 ~ 1,000세대 미만)	330㎡ 이상	333.19
	주민운동시설	-	-	200.00
	휴게공간	-	-	265.00
	어린이집	서울시 주택 조례(500세대 ~ 1,000세대 미만)	330㎡ 이상	342.94
	어린이놀이터	200㎡+828세대×1㎡	1,028.0㎡ 이상	1,032.90
	작은도서관	서울시 주택 조례(500세대 ~ 1,000세대 미만)	158㎡ 이상	185.00
	다함께돌봄센터	최소 66㎡ 이상	66㎡ 이상	80.00
	피트니스센터	-	-	507.17
부대시설	관리사무소	10㎡+(828세대-50세대)×0.05㎡	48.9㎡ 이상	80.00

※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「건축법」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 법령, 조례 기준 적용

7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(안)

구분	구역 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 비 개 량 계 획 (동)					비고
	명 칭	면 적 (㎡)	명 칭	면 적 (㎡)		계	존 치	개 수	철거후 신 축	철 거 이 주	
계	-	21,100.5	-	19,247.0	-	135	-	-	135	-	-
신규	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21,100.5	획지1	19,247.0	수유동 58-9 일대	135	-	-	135	-	-

- 이하여백 -

8) 건축물에 관한 계획(안)

가)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높이 등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 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(최고층수)	비고																				
	명 칭	면 적 (㎡)	명 칭	면 적 (㎡)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규	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21,100.5	획지1	19,247.0	수유동 58-9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% 이하	455% 이하	120m 이하 (36층)	-																				
	• 주택공급계획: 828세대(임대주택 327세대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세대수</td><td>비 율(%)</td><td>비 고</td></tr><tr><td>합 계</td><td>828</td><td>100.0</td><td>재개발 의무임대 52세대, 장기전세 275세대 포함</td></tr><tr><td>전용60㎡ 이하</td><td>416</td><td>50.3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용60㎡초과 ~ 85㎡ 이하</td><td>353</td><td>42.6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용85㎡ 초과</td><td>59</td><td>7.1</td><td></td></tr></table>										구 분	세대수	비 율(%)	비 고	합 계	828	100.0	재개발 의무임대 52세대, 장기전세 275세대 포함	전용60㎡ 이하	416	50.3		전용60㎡초과 ~ 85㎡ 이하	353	42.6		전용85㎡ 초과	59	7.1	
	구 분	세대수	비 율(%)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합 계	828	100.0	재개발 의무임대 52세대, 장기전세 275세대 포함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60㎡ 이하	416	50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60㎡초과 ~ 85㎡ 이하	353	42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85㎡ 초과	59	7.1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(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) 적용 - 국민주택규모(전용 85㎡ 이하)의 건설비용: 전체 주택세대수의 80% 이상 확보 -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용: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%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% 이상 확보 (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연면적은 제외) - 전용 40㎡ 이하 임대주택 건설비용: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(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제외)의 30% 이상 또는 전체 주택세대수의 5% 이상 확보 • 공공(장기전세)주택 공급계획: [법정상한용적률-상한(정비계획)용적률]×1/2 이상 확보 •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준수 (필수항목 ① 지속가능형공동주택 ② 친환경건축물 ③ 역사문화보존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축선에 관한 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건축한계선: 획지경계선으로부터 삼양로74길변, 삼양로80길변 폭원 3m, 삼양로변, 삼양로74가길변 폭원 5m(도면참조) (건축한계선 후퇴구간은 보도형 전면공지 및 대지내 공지로 조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지안의 공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쌈지형 공지: 수유초등학교와 미아11구역 어린이공원이 만나는 삼양로74가길과 중로3-(1)(삼양로74길) 교차지점 위치 지정(도면참조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나) 용적률에 관한 계획

구 분	산정 내용							
토지이용계획	구역면적	획지면적	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	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	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	공공주택 (장기전세) 토지지분	건축물 기부채납	
							토지지분	환산부지
	21,100.5㎡	19,247.0㎡	1,853.5㎡	51.3㎡	1,540.9㎡	5,289.2㎡	-	-
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율	• 의무 공공기여율: 27.61%(면적: 5,371.41㎡ 이상) = [(법정상한용적률-상한용적률)×1/2]÷법정상한용적률 → 제2종일반주거(7층이하) = [(454.10% - 190%)×1/2]÷454.10% = 132.05%÷454.10% = 29.08% → 제3종일반주거 = [(454.10% - 210%)×1/2]÷454.10% = 122.05%÷454.10% = 26.88% ⇒ (가중평균) (29.08%×9,006.1㎡+26.88%×10,240.9㎡)÷19,247.0㎡ = 27.91% ※ 의무 공공기여 면적 = 용도지역 상향 획지면적 19,247.0㎡×27.91% = 5,371.41㎡ 이상							
계획 공공기여율	• 계획 공공기여율: 28.84%(계획 5,550.5㎡) = [공공시설제공(순부담)면적+공공주택 용적률 토지지분면적]÷용도지역 상향 획지면적 = [261.3㎡+5,289.2㎡]÷19,247.0㎡ = 5,550.5㎡÷19,247.0㎡ = 28.84% ※ 공공주택 용적률 토지지분면적 = [(법정상한용적률-상한용적률)×1/2]÷법정상한용적률×획지면적 = [(454.10%-204.52%)×1/2]÷454.10%×19,247.0㎡ = 5,289.2㎡							
공공시설 제공(순부담) 면적	• 순부담 면적: 261.3㎡ = 공공시설 토지(부지)제공면적+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= 261.3㎡+0㎡ = 261.3㎡							
공공시설 토지(부지) 제공면적	• 공공시설 토지(부지)제공면적: 261.3㎡ =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-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(무상양도)+건축물기부채납 토지지분 = 1,853.5㎡-1,592.2㎡+0㎡ = 261.3㎡							
건축물 환산부지 면적	• 해당없음							
용 적 률	• 기준용적률: 200.64% ※ 획지 기준용적률: [(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면적×190%)+(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×210%)]÷획지면적 = [(9,006.1㎡×190%)+(10,240.9㎡×210%)]÷19,247.0㎡ = 200.64% ※ 기반시설 기준용적률: [(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(7층이하)-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)×190%]+[(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-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)×210%]÷(기반시설면적-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면적) = [((637.1㎡-767.5㎡)×190%)+(1,216.4㎡-824.7㎡)×210%]÷(1,853.5㎡-1,592.2㎡) = [(-130.4㎡×190%)+(391.7㎡×210%)]÷(261.3㎡) = 219.98%							
	• 상한(정비계획)용적률: 204.52% = 기준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토지+1.2×α건축물) = 200.64%×(1+1.3×1.09639×0.01358+1.2×0) = 200.64%+3.88%+0% = 204.52% ※ 가중치 = 공공시설 등 제공 기준용적률÷사업부지 기준용적률 = 219.98%÷200.64% = 1.09639 ※ α토지 =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÷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= 261.3㎡÷19,247.0㎡ = 0.01358 - α건축물 = 건축물환산부지면적÷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= 해당없음							
	• 법적상한용적률: 454.10%(준주거지역 455% 이하)							

9)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(안)

항목	지점(주)	개 선 대 책
주변가로 및 교차로	- ④ ⑤ ⑥	• 사업지 주변 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- 삼양로: 도로 확폭(B=3m, L=151m), 왕복 5차로 운영 - 삼양로74길: 도로 확폭(B=4.5m, L=414m), 왕복 3~4차로 운영 - 삼양로80길: 도로 확폭(B=3.0m, L=116m), 왕복 2차로 운영
	-	• 사업지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 운영방안 제시 - 2개소
진출입 동선	①	• 삼양로74길 상 진출입구 설치(1개소) - B=14m, 왕복 4차로 확보 - 진출입구 회전반경 R=6.0m 이상 확보 - 점멸신호 교차로 운영
	②	• 삼양로80길 상 부출입구 설치(1개소) - B=7m, 왕복 2차로 확보 - 진출입구 회전반경 R=6.0m 이상 확보 - 무신호 교차로 운영
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	-	• 삼양로 상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- 1개소
	-	• 사업지 인접구간 보도 확폭 및 설치 - 삼양로74가길 상 보도 확폭(B=2.0m) - 삼양로74길 상 보도 설치(B=1.0~2.0m)
	-	•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- 12개소
	-	• 사업지 내 각 동 보행출입구 인근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- 법정주차의 20% 이상 설치
주 차	-	• 계획대수 : 총 1,181대 - 법정주차(796대)의 148.4% 설치 - 주차수요(2030년, 946대)의 124.8% 설치 - 장애인주차 계획주차의 3.0% 이상 설치 - 확장형주차 계획주차의 30.0% 이상 설치 - 전기차 충전시설 계획주차의 5.0% 이상 설치
교통안전 및 기타	-	• 주차램프 전면 차량 경고등 설치
	-	• 시거불량지점 반사경 설치
	-	• 사업지 주변 도로 상 교통안전표지 설치 - 관계기관 협의 후 시행

주)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

10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안)

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
환경보전	토지이용	-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- 녹지공간 최대 확보	—
	대 기 질	-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-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	—
	수 질	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	—
	폐 기 물	-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- 지구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-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	—
	소음, 진동	-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-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- 부지내에 녹지 최대확보	—
재난방지	- 피난 및 응급차량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-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-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-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- 대상지는 호우 침수 피해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해당되지 않음		—

※ 호우 침수피해지역은 서울안전누리(<https://safecity.seoul.go.kr>) 참고

11)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(안)

정비구역 주변현황	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		비 고
동측	수유초등학교	-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·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- 대상지는 절대 및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 규제사항을 준수토록 하겠음	—

- 이하여백 -

12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안)

가) 재개발임대주택 계획

구 분		계 획 내 용		
계획기준		-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용: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%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% 이상 확보 (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연면적은 제외) - 전용 40㎡ 이하 임대주택 건설비용: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% 이상 확보(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제외)		
재개발임대 의무기준	재개발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용	전체세대수의 15.0% 이상 = 전체세대수 343세대×15% = 51.45세대 이상 < 계획 52세대(15.16%)		
	전용 40㎡ 이하의 임대주택비용	임대주택세대수의 30% 이상 = 재개발임대주택 52세대×30% = 15.6세대 이상 < 계획 28세대(53.85%)		
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		주택규모(㎡)	세대수(세대)	비 고
		소 계	52	전체세대수의 15.16%
		전용 39.95(공급 57.75)	28	-
		전용 49.97(공급 72.28)	20	-
		전용 59.94(공급 87.80)	4	-

나) 공공주택(장기전세주택) 계획

구 분		계 획 내 용		
계획기준		• 공공주택(장기전세)공급기준 [법정상한용적률-상한(정비계획)용적률]×1/2 이상 확보 • 전용85㎡ 이하 주택으로 공급 원칙(60㎡ 이하 : 60㎡ 초과 = 8 : 2 권장)		
상한(정비계획)용적률		• 204.52%		
법정상한용적률		• 454.10%(준주거지역 455% 이하)		
공공주택 (장기전세) 의무면적	용적률 증가분	• 249.58% = 법정상한용적률-상한(정비계획)용적률 = 454.10%-204.52%		
	증가용적률1/2	• 124.79%		
	의무 연면적	• 24,018.33㎡ 이상 < 계획 24,125.99㎡ = 증가용적률 1/2×획지면적 = 124.79%×19,247.0㎡		
공공주택(장기전세) 건설계획		주택규모(㎡)	세대수(세대)	연면적(㎡)
		소 계	275	24,125.99
		전용 49.97(공급 72.28)	125	9,035.29
		전용 59.94(공급 87.80)	100	8,779.99
		전용 84.95(공급 126.21)	50	6,310.71

- 이하여백 -

사. 관련 도면: 붙임 참조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공람도서 참조)

1. 정비구역 결정(안)도
2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안)도(기정, 변경)
3. 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도(기정, 변경)
4. 정비계획 결정(안)도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아. 관계도서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 및 서울도시공간포털에 게재)

자. 기타 공고문 상 생략된 자세한 정비계획 내용 및 관련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및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재된 도서파일로 갈음하고, 해당 계획내용 등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협의·심의 등 향후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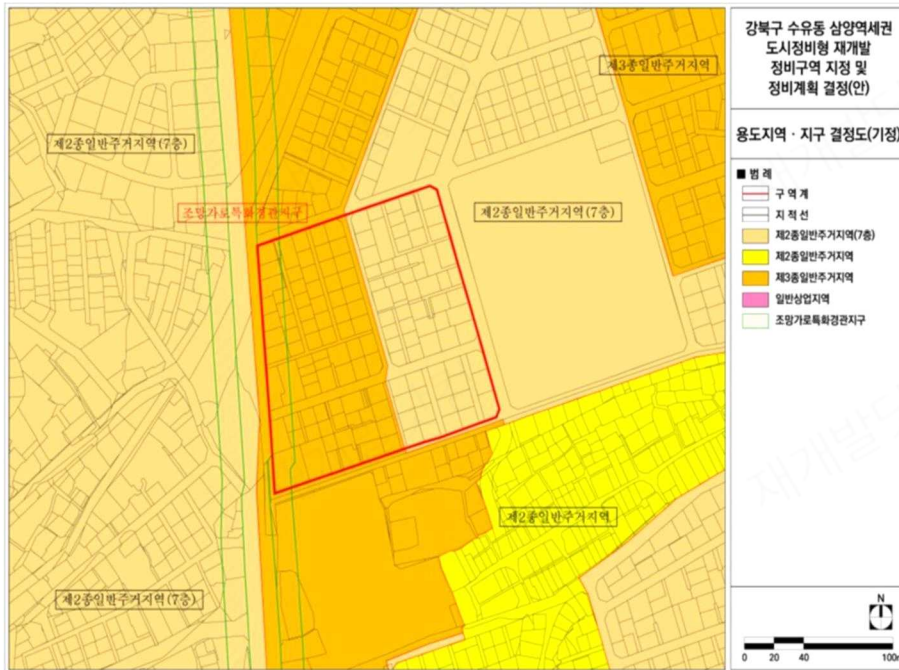
- 이하여백 -

- 관련 도면
○ 정비구역 결정(안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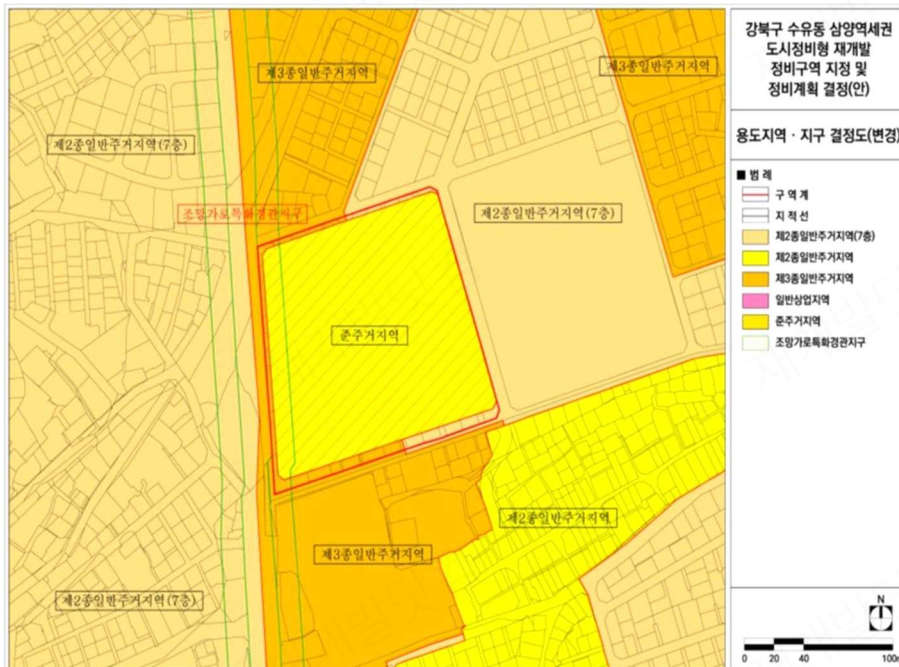


- 이하여백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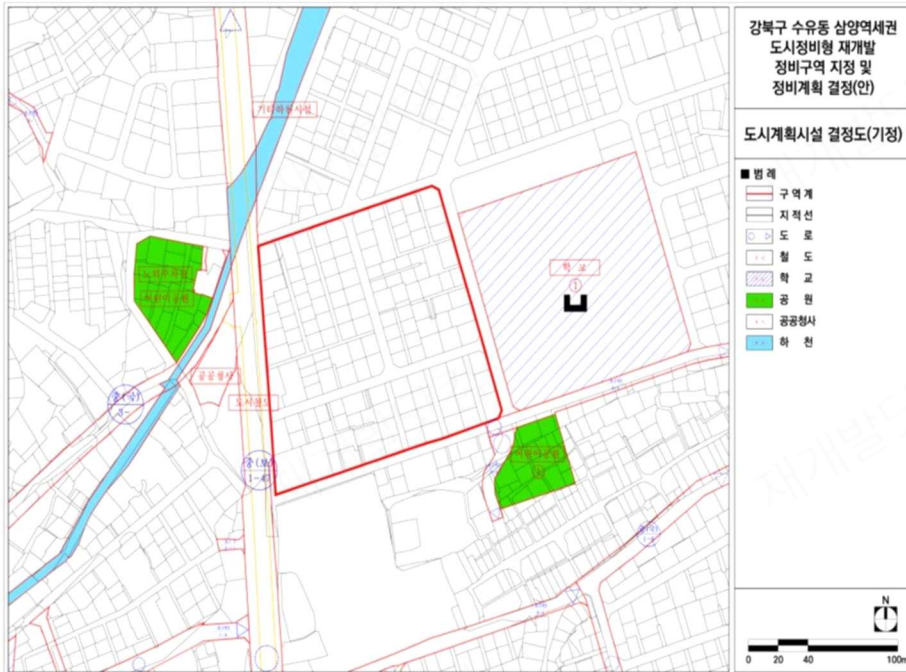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·지구 결정(안)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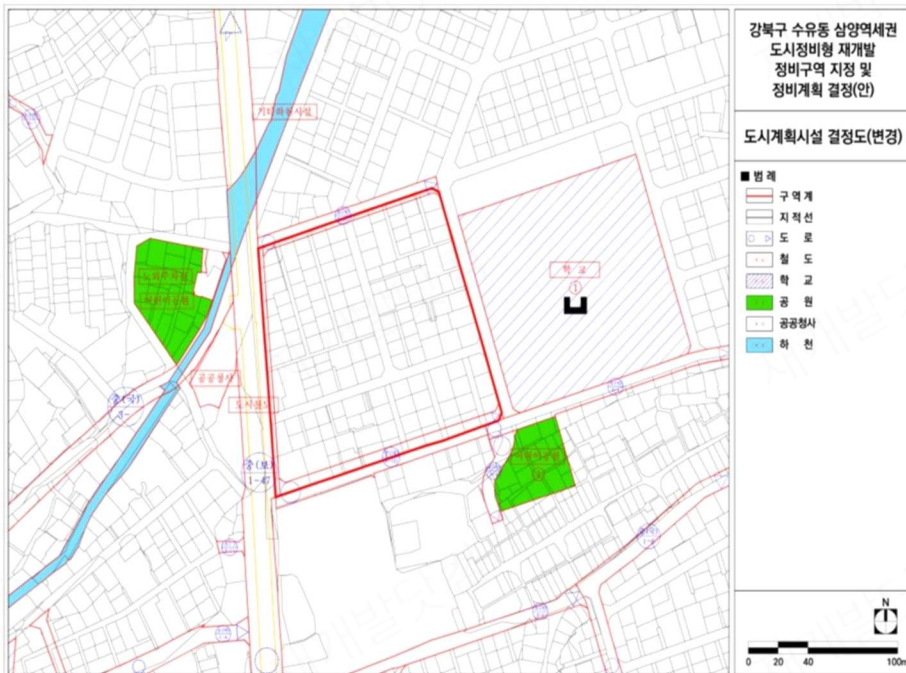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·지구 결정(안)도(변경)

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도(기정)

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도(변경)



○ 정비계획 결정(안)도

